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- 985호

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·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‘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
나. 명칭 : 홍은동 11-36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-360번지 일원

나. 면적 : 11,599.60㎡

3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가. 법인의 명칭 : 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나. 사무실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00-35, 2층

4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간(2026. 6. 27. ~ 2026. 7. 10.)

5. 공고방법 : 서대문구 홈페이지

6. 공람장소

-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(☎02-330-4365)

- 홍은동 11-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395-3737)

7. 공람내용 :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

8. 변경인가 신청내용 : 조합 정관 및 임원 변경 등

9. 의견제출 및 문의 :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(☎02-330-4365)

10. 의견제출 기간 : 공람기간 내 (2026년 7월 10일까지)